

2025년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 모집 연장공고(평택시)

경기도 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사업장에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을 지원하여 인명사고 방지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 개선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3월 24일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I 사업개요

- 사업명 : 2025년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개선지원
- 주최/주관 : 경기도 / (재)경기테크노파크
- 사업목적 : 도내 중소기업의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 개선을 통한 화학사고 예방
- 지원내용 : ①안전시설(국소배기장치, 외부유출 방지설비 등) 설치, 개선비 지원
②안전장치(가스·누액감지기, 방재용품, 보호구 등)구입비 지원
- 신청자격 : **평택시** 소재 유해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 사업장
- 지원 예산규모(도비 + 시비) : 금3,561만원
- 지원기업 수 : 예산 범위 내 지원

* 총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기업 수가 정해지므로, 다수의 기업이 지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별 신청기업은 **사업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요망**

- 모집기간 : 2025년 3월 24일(월) ~ 4월 02일(수) 오후 6시
- 수행기간 : 협약체결일(선정 통보일)로부터 07월 31일까지
 - ※ 사업수행기간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본사공장연구소 등이 평택시 관내 소재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 사업장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취급시설 사업장
- 지원내용 : 상세지원내역 별첨1, 2 참조
 - 안전시설(국소배기장치, 외부유출 방지설비 등) 설치, 개선비 지원
 - 안전장치(가스·누액감지기, 방재용품, 보호구 등)구입비 지원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원범위 제외

- 1) 부가가치세
- 2)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가건물 포함)
- 3) 기존 시설을 철가만 하는 경우
- 4) 단순 용량증대(단, 기존 노후시설이 용량부족으로 위험요소가 있거나, 시설개선 및 증설을 희망할 경우 일부 용량증대 부분을 고려할 수 있음)
- 5) 비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를 포함하는 경우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3,561만원 이내(기업부담금 총사업비의 20% 이상)
 - 사업비 구성 예시

구 분		총 소요비용(만원)	道·市 지원금(만원)	기업부담금(만원)
사례 1	금액	10,000	3,561	6,439
	비율	100%	35.6%	64.4%
사례 2	금액	4,400	3,520	880
	비율	100%	80%	20%
사례 3	금액	3,000	2,400	600
	비율	100%	80%	20%

* 심의위원회 판단하에 과제비가 과도하게 계상된 경우, 선정평가위원회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기업이 신청한 지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음

III

추진일정 및 방법

□ 추진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추진내용	일정
사업공고 및 홍보, 신청접수	○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3월 ~ 4월 초
↓		
지원기업 선정평가, 지원대상자 결정	○ 1차 서류검토 ○ 2차 현장점검 ○ 3차 전문가 서면평가	4월 2주
↓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과제추진	○ 협약구비서류 접수 및 협약체결 ○ 기업부담금 입금 후, 지원금 선지급* * 지급이행보증보험 제출 필수 ○ 협약기업 대상 사업비 집행요령 교육	4월 3주~4주
↓		
중간점검	○ 계획 대비 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현황 점검 (사안에 따라 수시 점검 가능)	5~7월
↓		
결과보고서 접수	○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접수	~ 7월 31일
↓		
사업비 정산 및 최종평가 및 사후관리	○ 사업계획 대비 최종 수행결과에 대한 최종 현장점검 ○ 사업비 정산통한 불인정 금액 및 반납금액 확정·통보	8월
↓		
사후관리	○ 기업별 반납금액 수납 ○ 성공사례 발굴	12월 말

□ 선정절차 : 현장점검(평가위원 1인, 간사 1인) 및 심의위원회 전문가 서면평가

□ 선정방법 : 선정평가 평가지표에 따라 종합평점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지원기업 선정(과도한 과제비 계상 여부 검토, 기업에서 신청한 지원금액 감액 조정 가능)

- 예산범위 내에서 종합평점에 따라 순위를 정해 선정
- 종합평점 산출 결과, 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평가지표 항목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 선정업체가 협약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 업체 추가 선정 가능

□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점				
위험도 (30)	①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15) ※ 영업허가 기준으로 취급량이 많은 순으로 평가	1,000톤 이상	500톤 이상		100톤 이상	
		15	13		11	
	② 주민대피 대비물질(16종) 취급여부(15) ※ 영업허가 기준으로 1종이상 취급할 경우 점수 부여	5종 이상	3종 이상		1종 이상	
		15	13		11	
영세성 (25)	④ 근로자수(15) ※ 공고시점 이후 발급된 4대보험 가입증명원 기준으로 평가 ※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SIMS)을 통한 검증 및 확인	5인 미만	20인 이하	50인 이하	100인 이하	100인 초과
		15	14	13	12	11
	⑤ 업체규모(10)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은 중소기업확인서 확인 ※ 3년 이내 중견기업은 중견기업확인서의 특례 해당여부 확인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10	9		8	
사업 효과성 (20)	⑦ 지원에 따른 사고예방 효과(20) ※ 시설 개선 및 교체에 따른 사고 예방 효과를 평가	지원에 따른 사고 예방 효과(정상평가)				
		20	18	16	14	
노후도 (15)	③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의 설치년도(15) ※ 증빙 자료 등이 없을 시 사업장 운영 연수	20년이상	10년이상 20년미만		10년미만	
		15	13		11	
투자 의지 (10)	⑥ 총 자부담금 규모(10) ※ 자부담금이 많을 경우, 투자의지가 높다는 기준으로 평가	5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1,400만원 이하	
		10	9	8	7	
가점 (4)	① 지원사업 참여의향 수요조사서 응답여부(2) ※ '24년 사군 - 도 제출 공문기준	응답		미응답		
		2		0		
	②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맞춤형 컨설팅 기 참여업체(2)	참여		미참여		
		2		0		

□ 지원방법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서 수정 또는 사업비 조정 이후 협약 체결
- 전용 사업비 관리 계좌에 선정기업의 자부담금 입금내역 확인 후 지원금
先지급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필수

(이행보증기간은 '25년 12월말 까지로 하고, 발행비용은 기업 부담)

- 최종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 적정성을 검토하여 불인정금액 및 잔액 환수

□ 지원규모 : 예산범위 내 지원

- 신청기간 : '25년 3월 24일(월) ~ 4월 02일(수) 오후 6시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 사업공고)
- * (제출요령) 파일명은 '기업명'으로 하여, 1개의 압축파일로 제출 (㈜○○○.zip)
- 제출서류
-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3월 24일)이후 서류로 발급·작성 제출

제출서류		양식
1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별지 제1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3	영업허가증 1부 ※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주민대피 대비물질(16종) 취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4	중소기업 확인서(유효기간 확인 必,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5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의 사양서, 도면(배치도, P&ID, PFD)	-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 확인必)	-
7	사업장 4대보험 가입증명원(사업공고일 이후 발급한 가입자명부)	-
8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별 견적서, 비교견적서 또는 산출근거, 설치업체 사업자등록증	-
9	중복지원 금지 약약서	별지 제2호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별지 제3호
11	정보활용 동의서	별지 제4호
12	지원대상 시설 설치년도 증빙자료(없을 시, 사업장 운영 연수 증빙 자료)	-

- * 설치업체는 해당 지원항목에 대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건설업,제조업, 가스기기 설치 및 도소매, 전자기기 설치 및 도소매, 펌프 모터 설치 및 도소매, 계측기 설치 및 도소매, 통신 설비 설치 및 도소매, 음향기기 설치 및 도소매 등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항목이 사업자 등록증에 업태·업종·종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 정전기 제거 목적으로 가습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대습도 70% 이상 상시 유지관리방안 계획서 제출해야 함

V

주의사항

□ 지원제외 대상

- 지원받고자 하는 취급시설에 대해 타 기관에서 이미 지원금을 받았거나 지원이 진행 중인 경우
- 지원업체가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경우
- 경기도 또는 경기TP 지원사업 제한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 지원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 과거 운영기관 지원사업에서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이득을 취한 업체
-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거나 선정 이후 과제추진 중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 필수 제출서류 중 일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등)
- 사업기간 내 사업장 이전 계획이 있는 업체
- 기타 지원사업의 목적 및 사업의 성격에 부적합한 업체

* 단, 타 지원금 수급이력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지 아니한다.

- 1) 해당설비가 아닌 타 설비의 지원금을 수령 받은 경우
- 2) 타기관 지원금 운영지침의 사후관리 기간이 종료된 경우
- 3) 취급시설 설비의 교체 및 보수가 아닌 연구개발 등의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타

- 신청인(신청기업)의 착오 및 기재 오류로 인하여 보완자료 미제출시 접수를 반려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신청기업)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 외에 대해서는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따름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상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사업 참여제한(5년), 제재사실 공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선정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 참여제한(3년)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VI

문의처

□ 경기테크노파크 미래사업팀 담당자 031)500-3050

별첨1

지원항목 및 세부내역

연 번	지 원 항 목	세 부 내 용
1	누출경보시스템 및 비상전력설비	검지 및 경보설비(누액/가스감지기)와 통신설비(구내전화, 무전기, 확성기 등) 설치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누출을 미리 감지해 위해를 예방하고 정전 시에도 전력이 공급되도록 비상전력설비 설치 (배터리 또는 비상발전기 등)
2	화학사고 보호구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하고 응급 조치에 필요한 개인보호장구 구비 및 비치 (방독마스크, 보호복, 내산장갑등)
3	방재용품	사고 유해화학물질의 방재 작업에필요한 물품 구비 및 비치 (케미칼흡착포, 흡착웬스, 통제테이프, 비상랜턴등)
4	방폭설비	폭발사고 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방폭전기설비 설치 (방폭펌프, 방폭조명, 방폭콘센트, 방폭전선등)
5	배관 및 관련설비	취급물질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고 있으며, 적절한 강도 및 두께의 배관 및 관련설비
6	환기, 배출설비 개선	회전식 고정벤티레이터, 루프팬방식의 설비, 월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환기능력을 갖는 설비
7	긴급차단설비 (인터록 등)	액화상태 기체 화학물질 송출 및 이입하는 배관 등에 긴급차단장치
8	국소배기장치 (후드, 덕트)	유해화학물질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실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배출설비
9	긴급세척시설	작업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시설 포함)
10	정전기 제거설비	정전기 발생 방지를 위한 정전기 제거 설비(접지, 피뢰침 설치 등)
11	방류벽	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저장탱크의 방류벽 설치, 보수, 바닥공사
12	적재하역장소 방지턱/트렌치	하역하는 시설의 바닥둘레에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 하도록 방지턱 또는 트렌치설치, 보수, 바닥공사, 집수시설 포함
13	외부유출 방지설비	제조사용시설, 보관시설의 외부유출 방지설비 설치·보수 (출입구 방지턱, 트렌치 등)
14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	제조사용시설, 저장시설 등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설비 (교반기, 반응기, 펌프 등)
15	적재함	운반차량에 유해화학물질을 충전·운반할 수 있는 용기를 적재하나 하역할 때 넘어짐 등으로 인해 충격 방지를 위하여 적재함 설치
16	저장탱크	해당 물질의 특성에 적합한 재질의 저장탱크 교체 및 보수, 저장탱크 이격을 위한 탱크 이설, 지반조사(공사), 고정장치 포함
17	펌프 등 유체 이송장치	유해화학물질 이송 펌프 설비에 대한 기준준수 및 유지·보수 (견고한 기초설계, 방지턱, 바닥경사 및 집수설비 등)
18	계측장치(배관 외)	내부물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가 필요한 계측장치 (온도계, 액위계, 유량계, 압력계 등)
19	조명설비	일조시간 이후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적절한 조도 수준을 위한 조명
20	기타	기타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별첨2

주요 지원항목 세부내역 예시

지 원 항 목	세 부 내 용	사 진 예 시
<p>누출경보시스템 및 비상전력설비</p>	<p>경보설비(누액/가스감지기)와 통신 설비(구내전화, 무전기, 확성기 등)</p>	
<p>화학사고 보호구</p>	<p>응급조치에 필요한 개인보호장구 (방독마스크, 보호복, 내산장갑 등)</p>	
<p>긴급차단설비 (인터록 등)</p>	<p>화학물질 송출 및 이입하는 배관 등에 긴급차단장치</p>	
<p>긴급세척시설</p>	<p>인체누출 시 긴급세척시설 (샤워시설 포함)</p>	
<p>방류벽</p>	<p>물질누출 확산방지를 위한 방류벽 설치, 보수, 바닥공사</p>	
<p>외부유출 방지설비</p>	<p>외부유출 방지설비 설치·보수 (출입구 방지턱, 트렌치 등)</p>	